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양돈법률상담코너'에 게시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



김태욱 변호사

신축 돈사에 관한 문의

Q 신축 돈사를 짓고자 땅을 구입하고 허가를 취득하여 현재 공사시작 직전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대가 심한 상태이며 국회, 청와대, 군 등에 주민들의 서명서와 함께 많은 민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회신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몇 번 도착을 하였으나 주민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모아 법원에 공사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A 이러한 사정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돈장을 신규 개설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문제없다는 회신이 온 것으로 봐서는 법적으로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인데, 귀하께서는 계획대로 신축 공사를 추진하시면 됩니다. 만일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그에 대하여 귀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분뇨처리에 관한 문의

Q 얼마전 휴경중인 저희 밭에 축산분뇨를 살포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서 신고를 한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장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탱크로리차에싣고 겨울철 휴경중인 밭에 거름용으로 살포한다면, 이것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 축산분뇨가 밭이외의 다른곳으로 흘러가거나 이동중에 유출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A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불법입니다. 현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사육시설의 면적이 50m² 이상인 양돈농가는 반드시 폐수처리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밭에 거름용으로 살포하더라도 그것은 저장액비화 시설을 거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규모에 맞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용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은 처리업자에게 위탁을 하여 분뇨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폐사돈 처리에 관한 문의

Q 일반폐사돈 처리를 폐기율 관리법에 의해 처리 하는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1항에 의해 처리하는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폐기율 관리법에 의해 처리를 해야 한다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까?

A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동물의 사체를 그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폐사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폐사돈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전염성질병에 걸려서 사망한 것으로 볼만한 이유가 있다면, 이 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폐사돈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사의 원인이 전염병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면 됩니다. 이 때는 관할 행정기관이나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제품의 폐기방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였고 폐사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같이 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축분 · 농 처리에 관한 문의

Q 폭기조 정화조를 가동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정화조는 수질기준치에 문제없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관내 맑은 물보전과에서 다녀갔는데 축분뇨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화조는 정상가동중이며 분은 퇴비사에서 정상적으로 발효시키고 있었는데 밭에 거름을 뿌릴 목적으로 밭에 좀 쌓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생축분이 아니고 왕겨로 비벼서 이미 발효시킨 퇴비를 밭에 뿌리기전에 임시로 두었는데도 밭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해당 관청은 귀하에게 퇴비화 시설과 관련하여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발효가 이미 완료된 퇴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밭에 임시로 잠깐 두었고, 비가 와도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잘 설명하시고 그 퇴비를 옮기는 날짜를 정확히 제시하여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설마하는 방심속에 멀어지는 선진양돈